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86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임종득의원안) ..	3

I. 개요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486호)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2) 발 의 일 : 2026. 2. 2.
- (3) 회 부 일 : 2026. 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임종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9 신설) ○ 공제대상: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 ○ 공제율: 30%(중소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20%(그 외의 경우) ○ 사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액 상당금액 추징 ○ 적용기한: 없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임종득의원안 2026. 2. 2. 발의(의안번호 16486)

☐ 개정안은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1)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 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의 30%(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또는 20%(그 외의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하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①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②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③ 대학을 말함.²⁾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을 말함. 초기에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통신, 뷰티테라피&메이크업, 군사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관련한 학과가 신설되고 있음.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및 혼합형으로 구분됨. 채용조건형 유형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³⁾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유형이고, 재교육형 유형은 재교육형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유형이며, 혼합형은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혼합으로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학생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부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산업체에서 채용을 확정하여 재교육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유형을 말함.

2025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 중 계약학과 수는 235개로 2024년과 동일하고, 학생 수는 9,636명으로 전년 대비

3) 단, 비수도권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필요경비의 50%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3.2% 증가하였음. 또한, 전문대학 129개교 중 계약학과 수는 153개로 2024년 대비 3.4% 증가했고, 학생 수는 4,119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음.

[2025년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단위: 개, 명, %)

구분		계약학과수								재학생수								증감률
		2025				2024				2025				2024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전체 (193교)		39	158	38	235	40	164	31	235	2,767	4,753	2,116	9,636	2,625	4,845	1,868	9,338	3.2
설 립	국·공립 (39개교)	4	44	9	57	2	45	7	54	255	1,750	251	2,256	198	1,781	323	2,302	△20
	사립 (154개교)	35	114	29	178	38	119	24	181	2,512	3,003	1,865	7,380	2,427	3,064	1,545	7,036	4.9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24	72	17	113	22	70	18	110	2,233	2,067	1,417	5,717	1,918	2,068	1,292	5,278	8.3
	비수도권 (120개교)	15	86	21	122	18	94	13	125	534	2,686	699	3,919	707	2,777	576	4,060	△35

주: 2025년 4월 기준

자료: 교육부

[2025년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전문대학)]

(단위: 개, 명, %)

구분		계약학과수								재학생수								
		2025				2024				2025				2024				증감률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채용 조건 건형	재 교 육 형	혼 합 형	계	
전체 (129개교)		8	100	45	153	22	100	26	148	276	2,913	930	4,119	441	2,919	670	4,030	2.8
설 립	공립 (6개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립 (123개교)	8	100	45	153	22	100	26	148	276	2,913	930	4,119	441	2,919	670	4,030	2.8
소 재 지	수도권 (42개교)	4	51	14	69	3	45	13	61	224	1,540	368	2,132	211	1,469	377	2,057	3.6
	비수도권 (87개교)	4	49	31	84	19	55	13	87	52	1,373	562	1,987	230	1,450	293	1,973	1.9

주: 2025년 4월 기준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내국인이 계약학과 등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의 20%~30%만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계약학과 등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하여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둘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상향된 공제율(30%)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및 제주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 500개사 중 51.4%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에 달하였음.⁵⁾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85개 지역이 수도권 밖

4) 한국경제인협회,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 2025. 10.

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 2025. 3.

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50.5%)’가 선정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 중 2번째로 필요한 중점과제로 ‘대폭적인 조세 감면(38.4%)’이 선정되었음.⁶⁾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기업 채용 연계 계약학과와 경우 별도의 세제지원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7개 대기업과 연계된 16개 계약학과와 2026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은 12.77 : 1로, 2025학년도 9.77 : 1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둘째, 기업 등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업이 해당 계약학과를 졸업한 인원을 채용하여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정부는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이 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현행법상 기업 등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됨.⁷⁾

6) 대한상공회의소,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2022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제10조)]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셋째,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 경로에 따라 차등화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능력이 아니라 계약학과 등의 출신에 따른 채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넷째, 개정안에 따르면 본 세액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적용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해당 특례의 타당성,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정책의 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2. 인력개발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